

#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

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“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”과 동법 제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“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6년 12월 29일  
중 소 기 업 청 장



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| [www.kcca.or.kr](http://www.kcca.or.kr)

##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공고

1. 이 공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유효기간 :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은 2009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. (다만,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10조(지정제외)에 따라 효력기간내에 지정제외 될 수 있다.)
3.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-178호(2005. 12. 30), 제2006-11호(2006. 1. 24), 제2006-26호(2006. 2. 15)는 이를 폐지한다.

### 1.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

#### 1. 총 칙

#### 가. 목 적

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“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”의 운영에 관한 사항, 동법 제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“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
나. 물품의 명칭 및 분류

① 제품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.

-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(G2B 분류번호, 8 단위)
-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규격(이하 “제품명” 또는 “세부품명”이라 한다)
- 수요처 규격
-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(5단위) 단,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의한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에 한한다.

② 제품의 해석은 제1항 제1호에 의한 분류번호 내에서 제2호에 의한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하며, 제1호의 분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호에 의한 제품명 또는 세부품명과 제3호의 수요처규격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,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만 적용한다.

다.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

- ①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직접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.

라. 기타의 규정

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”에 따라 운영한다.

※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(www.smba.go.kr)에 게재되어 있음

☞ www.smba.go.kr → 자료마당 → 법령정보 → 공고

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

번호	제품명	물품분류 번호	(세부품명)	산 업 분류번호	비 고
73	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	24112501	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	21211 21219	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